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85432 저작권 사용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오주현, 손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은아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94,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일자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D'를 편집저작물(프레젠테이션)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인보험을 주로 설계하다가 2020. 4.경 F청년주택사업의 시행사로부터 화재보험을 설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회사에서 화재보험을 주로 설계하던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청년주택사업의 화재보험설계를 위하여 3회에 걸쳐 피고와 피고의 직원에게 화재보험 가입설계서를 보여주면서 보험의 종류, 상품내용, 보험가액 등 화재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화재보험 제안서 샘플, PPT 자료 등을 보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청년주택사업의 시행사와의 문제로 위 화재보험계약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 협조에 따른 수수료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인보험에서 화재보험으로 영업 방향을 전환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던)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핵심 노하우는 아직 제가 하나도 안 드러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체결률이 높아지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2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20. 6. 1.부터 2023. 5. 31.까지(만 3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 저작권 양도기간 중 피고 및 피고의 지사 소속 영업직원이 체결한 3년 미만 일반화재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사용료(1% 또는 2%)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적재산권 양수도 및 일반화재보험 판매 노하우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 6. 29.자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7. 7. 위 2020. 6. 29.자 계약을 대신하여 새로이 '화



재보험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 및 영업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지적재산권 표시]

등록번호 : G(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피고, 이하 같다)의 화재보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갑'(원고, 이하 같다)의 지적재산권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2조(지적재산권의 설정)

'갑'은 위에 표시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을'에게 설정하며 '을'은 위 지적재산권을 보험영업 목적상 편집, 복제 및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위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있어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적재산권의 사용범위)

'을'과 '을'의 지사 소속 영업직원에 한정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저작권 및 주요 자료를 소속지사 영업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속지사 영업직원이 해촉 후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조(지적재산권의 사용기간)

본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또는 구두의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자동 갱신되어 1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기준)

본 계약기간 중 '을' 및 '을'의 소속지사 영업직원이 체결한 3년 미만 일반화재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래 지급율(1% 또는 2%, 아래 내용은 생략한다)에 의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11조(영업지원 업무제휴)

'갑'은 '을'에게 일반화재보험 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상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유무형의 노하우를 적의 제공하도록 하며, '갑'과 '을'은 영업활동 중 취득한 유익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13조(교육지원)

본 계약기간 중 '갑'의 필요에 의하거나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일반화재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20. 8.경까지의 사용료로, 2020. 7. 27. 323,817원, 같은 해 8. 27. 2,885,016원, 같은 해 9. 29. 98,957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9. 8.경 원고에게 '원고의 노하우 중 일부라도 습득하여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계약서 진행을 하였는데, 공유 요청을 거부하여 계약 해지로 알렸다. 지난 달 계약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0.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계약이고, 제11조 및 제13조의 유무형의 노하우 전달 및 교육지원에 따른 구체적 업무협조 조율이 불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유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2020. 9. 8. 해지 통보를 하였



고, 2020. 9. 1. 이후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남은 금전관계는 없음을 알리며 위 해지통보일로 계약해지를 거듭 밝힌다'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노하우가 집약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노하우가 집약된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한 영업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9.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이 사건 계약의 사용기간이 지난 2023. 6. 1.부터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¹⁾

나. 이 사건의 쟁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지적재산권 양수도 및 일반화재보험 판매 노하우 제공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20 6. 29.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화재보험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 및 영업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서'라는 제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먼저 명확히 한 다음,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을 검토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석

1) 구체적으로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내역을 회신받아 그 자료에 기초하여 H 주식회사 관련 총 58건의 계약에 대하여 합계 49,765,724원, I 주식회사 관련 총 65건의 계약에 대하여 합계 9,166,620원, J 주식회사 관련 총 12건의 계약에 대하여 합계 1,512,145원, K 주식회사 관련 총 3건의 계약에 대하여 합계 150,224원을 구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은 '화재보험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 및 영업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서'이고, 제1조에서 '계약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화재보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피고가 사용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피고에게 설정하며 피고는 지적재산권을 보험영업 목적상 편집, 복제 및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있어, 원고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사용범위', 제5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사용기간', 제7조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기준'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20. 6. 29.자 계약을 대신하여 새로이 체결된 계약으로, (즉 '지적재산권 양수도 및 일반화재보험 판매 노하우 제공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기간 중 피고 및 피고의 지사 소속 영업직원이 체결한 일반화재 계약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저작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양도기간 중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2020. 6. 29.자 계약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③ 피고는 청년주택사업의 화재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화재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 화재보험 제안서 샘플, PPT 자료 등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내지 동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화재보험 설계업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유상으로 그 핵심적인 노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²⁾

1)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이후 다수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을 설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20. 9. 이후 이 사건 저작물이

2) 한편 피고는, 2020. 9. 8.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20. 9. 8.자 해지통지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노하우 내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보험 설계 및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